

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17(월)

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1.28.

나. 제안자 : 김병철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4. 1.28.

라. 상정일자 : 2014. 2.10(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)

- 제안설명 : 김병철 의원
- 검토보고 :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희
- 심사내용 : 질의 및 토론
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들어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에너지 위기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등 세계 10위에 달할 만큼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함.
- LED조명은 백열전구의 84%, 형광등에 비해 약 40%의 전력이 절감되는 친환경 조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는 도입이 부진한 실정임.
-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처럼 24시간 조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는 시책을 도입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LED조명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제19호)
- 24시간 점등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21제9호)
- 민간부문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2조제5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」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, 시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, 군·구, 사업자 및 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.10. 4 제정되었음.
- LED조명은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조명시설로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-71호('13. 7.12 개정)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2014년부터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경우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전체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이번 조례 개정안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등을 근거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LED조명 보급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신설되는 제4조제19호에서 “LED(발광다이오드)조명”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다음 제21조제9호와 제22조제5호에서는 “LED조명”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4. 1.29.부터 2. 7.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현재는 LED가 고효율 제품이지만 차후에 품질이 더 좋은 제품이

출시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.

-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서 LED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허인환·이한구·윤제상·김영분·김정현·안병배·조영홍 의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8. 기타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“LED(발광다이오드)조명”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 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.

제2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장

제2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알선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9. “LED(발광다이오드)조명”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.</u></p>
<p>제21조(건물부문 에너지 시책) 시장은 건축물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1조(건물부문 에너지 시책)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.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장</u></p>
<p>제22조(세제 및 재정지원 등) 시는 에너지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2조(세제 및 재정지원 등)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용자 알선</u></p>